스포츠기본법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3 발의연월일: 2020. 10. 27.

발 의 자:이 용・金炳旭・엄태영

이주환・최승재・조경태

김예지 • 조수진 • 김성원

신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오늘날 스포츠는 체육활동의 영역을 넘어 사회문화적 형태로 자리 매김하여 우리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므로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그동안 체육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익스트림스포츠 등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 생겨나면서 현행 법령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존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포괄하고, 현행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스포츠권을 침해받지 아니함(안 제3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 츠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정 책의 추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교류기반 형성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안 제7조).
-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 아.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을 지정함(안 제10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1조).

스포츠기본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 2. "스포츠권"이란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 3. "스포츠단체"란 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스포츠권) 모든 국민은 스포츠권을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인 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스포츠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스

포츠를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가 보유한 능력을 폭넓게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존중하고,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있는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단체의 책무) ①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의 보급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의 추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스포츠단체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호,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스포츠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스포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 2. 스포츠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정비
 - 3. 스포츠 선수·지도자의 보호 및 육성
 - 4.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5.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간·지역 간 교류기반 형성
 - 6.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 7. 스포츠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제8조(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 2.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분야별 스포츠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4. 스포츠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5.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 6. 스포츠 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 7. 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분야별 스포츠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스포츠 가치의 확산
 - 2. 전문스포츠의 진흥
 - 3. 생활스포츠의 진흥
 - 4. 학교스포츠의 진흥
 - 5.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 6. 직장스포츠의 진흥

- 7. 전통무예의 진흥
- 8. 스포츠산업의 진흥
- 9. 스포츠과학 연구의 진흥
- 10. 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 11. 스포츠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 지원
- 12. 스포츠 시설의 조성 및 관리
- 13. 지역 스포츠의 활성화
- 14. 국제 스포츠 교류·협력 및 공헌의 확대
- 15. 남북 스포츠 교류의 촉진
- 제10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 진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를 삭제한다.